

#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정정 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(영업정지 등) 및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1. 대상업체

업체명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근거	처분내용
승리산업개발	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인천서구2021-06-07	인천광역시 서구 경중 로 20 1723호 (경서동)	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 조제3호	영업정지 6개월 2026.5.6. ~ 2026.11.6. (영업정지 시작일 변경)

#### 2. 기타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(<http://incheon.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